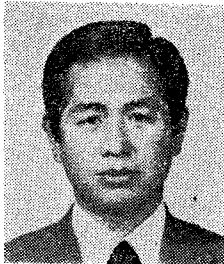


# 企圖特輯解說

## 技術革新時代의 國際通商과 知的 所有權 制度(2)



庾 麟 鳳

<國際特許研修院 教授部長>

### 目 次

- I. 世界經濟의 依存關係와 知的所有權의 重要性
    - 1. 知的所有權과 世界經濟의 依存關係
    - 2. 美國의 知的所有權 政策
    - 3. 發展途上國에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4. 先進國間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5. 知的所有權 制度에 關한 國際調整
  - II. 技術革新 技術移轉時代에서의 知的所有權制度
    - 1. 基本方向
    - 2. 日本의 基本立場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 <通商政策>

1970年代 後半부터 美國通商政策에 強하게 나타난 “相互主義에 입각한 公正貿易”이라는 원칙이 知的所有權制度에 對해서 適用되게 된 것이 確實하게 된 것은 1974年 通商法 301條의 發動要件의 범위를 明確히 한 1984年 通商關稅法에서이다.

301條項에는 大統領은 “不當하거나 不合理하거나 差別的인” 法令, 政策 또는 制度에 對해서 對抗策을 行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1974年 通商法에서는 이들 內容이 定義되어 있지 않았으나, 1984年의 通商關稅法에는 다음과 같이 定義되었다. (美國의 1984年 通商關稅法, 日本貿易振興會編에 依할)

④ 不合理한 美國의 國際的 法的權利를 確實히 侵害하거나 또는 이 權利와 반드시 矛盾되지 않는다해도 不當, 不公平하다고 간주되는 法令, 政策 혹은 制度를 意味한다.

이 用語에는 正當하고도 公正한

- 市場機會
- 企業設立機會 또는
- 知的所有權의 充分하고도 效果的 保護 提供을 拒否하는 諸法令·政策 또는 制度를 포함하나 이것만으로 限定되는 것도 아니다.

⑤ 不當이란 美國의 國際的 法的權利侵害 또는 이 權利와 矛盾되는 諸法令·政策, 혹은 制度를 意味한다. 이 用語에는 ④에서 말한 法令·政策 혹은 制度로 內國民대우 또는 最惠國待遇, 企業設立權利 또는 知的所有權保護가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限定되는 것도 아니다.

⑥ 差別的이란 用語에는 경우에 따라서 美國의 貨物 Service 또는 投資에 對한 內國民待遇 또는 最惠國待遇를 拒否하는 諸法令·政策 혹은 制度가 포함된다.

또 1984年 通商關稅法 251條에는 Computer Software 著作權保護가 規定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④ 著作權保護는 Computer Software의 基本的 保護形態임.

⑤ 強制 License制를 採用해서 著作權保護를 放棄하는 提議는 어떤것이 되든 諸國際的 Concensus를 害치고, 貿易을 애위한 緊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⑥ 어떤 國家가 Software의 著作權保護를 철회한다든가 폭넓은 強制 License制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萬國著作權條約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適切한 救濟措置를 求함”은 美國과 他國의 이익에 合致하는 것이다 라는 意見을 議會는 表明하였다.

더욱이 305條에서 High tech製品的 國際貿易에 關한 것을 교섭항목으로 取扱하고 있지만 交涉項目中에는 知的所有權制度가 같이 끼어있다.

㉔ 外國政府의 措置·政策 또는 慣行이 가져온 重大하고도 歪曲의 影響의 撤廢 提言 또는 거친 影響에 對한 補償實現. 이러한 경우 다음 事項에 特別히 注意해야 한다.

- 貿易·投資를 阻害하는 外國의 產業政策.
- 國內産業을 우대하기 위한 差別的 措置
- 知的所有權의 保全·行使·主張을 위한 充分하고도 效果의 手段을 外國人에 提供하지 않는 措置
- 主要製品的 國內市場 接近을 해하는 措置
- 反競爭的 市場慣行, 構造를 助長하는 措置

㉕ 知的所有權 및 機密情報의 財產價値取得, 行使를 위한 最低限의 Safe guard의 提供

以上과 같이 1984年의 通商關稅法은 High tech製品的을 中心으로 美國製品的의 外國市場에의 參加機會를 擴大해가고, 이러한 過程에서 相對國의 知的所有權制度未整備를 非關稅障壁(不公平貿易)으로 看做하는 傾向이 보이고 있다.

1985年 9月, Reagan 대통령은 通商政策 Actcon program을 發表하고, 其中에 知的所有權의 保護가 重要함을 述하고 政府施策方向을 表明하였으며, 다시 1986年 4月 USTR가 美國政府의 知的所有權 政策을 發表하고 多國間의 交涉, 2國間의 交涉 및 美國內에서의 知的所有權을 위하여 美國이 取해야 할 具體的인 政策을 明白히 하였다.

美國議會에서는 近年, 相當數의 知的所有權關係法案의 提出이 있어 이 問題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86年 5月에 下院本會議를 通過한 “1986年 貿易·國際經濟政策改革法”(포관무역법안으로 그중 지적소유권 관계로는 不公正한 수입거래에 의해서 美國産業이 피해를 입은 경우 ITC가 수입금지결정등을 規定한 1930年 關稅法 337條에 對해서, 특허침해등 지적소유권관계 경우에는 피해입증책임이 면제되는 등, 적용을 완화해서 보호를 強化하고 있다)이 1987年에 再次 議會에 提出되어 通過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나 本法에서도 通商政策에서의 知的所有權保護強化姿勢가 다시금 強力히 실천되고 있다.

더욱이 上院包括貿易法案의 提出에 앞서 Reagan大統領의 1987年度 一般敎書에서도 特許權을 비롯한 知的所有權保護強化를 주축으로한 國際競爭力強化가 提案되고 있다.

### 3. 發展途上國에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 가) 發展途上國의 知的所有權制度 整備狀況

美國의 國際貿易委員會(ITC)는 商業上의 模造·版權과 意匠의 침해·技術盜用等에 依한 知的所有權侵害增加가 현저하고, 模造의 경우만에도 1982년에는 美國企業에서 年間 60~80억 \$의 被害과 13萬人的 취업기회 상실, 1984년에는 約 200억 \$의 被害손실을 보았고, 또 美國의 著作産業(U.S Copy Right Industries)은 Singapore·대만·Indonesia·한국·Malaysia·Brazil 등에서 美國著作物에 對한 適切하고 效果의 保護가 되어있지 않아 年間 13억 \$ 以上の 被害손실을 입고 있다고 推計하고 있다.

不正商品貿易은 發展途上國이 어느程度 工業技術力을 가지게된 1970年代 중반경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여 先進國, 特別히 큰 손해를 보고있다고 主張하는 EC諸國과 美國을 中心으로 問題가 되기 시작했다.

○ 不正商品의 橫行은 數 10年에 걸쳐 Brand Image를 市場에 確立해온 製品賣上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Brand Image가 손상되어 소비자의 신뢰감이 低下할 염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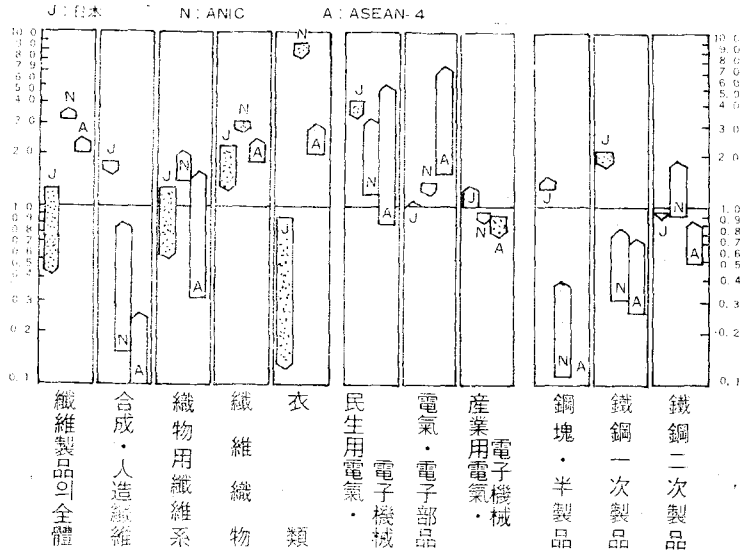
○ 이때문에 EC諸國과 美國은 1978年 東京 Round以來이 問題를 GATT의 場에서 取扱하여, 發展途上國의 法制度가 不充分하다 하여, 偽造商品輸入措置에 關한 協定(不正商品協定)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發展途上國의 反對때문에 合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發展途上國은 先進國으로 부터 企業을 받아들이며서 기술획득을 하고 국내기술력을 向上시켜 産業을 發展시키고 있다.

그러나 發展途上國은 知的所有權制度를 정비해도 권리는 外國企業이 獨占해버리고 더욱이 外國企業이 권리침해품의 排除를 위해서만 權利를 利用하고, 國內에서 事業을 施行하지 않고, 또 License를 주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制限條項을 붙이는 등, 高價의 License料를 要求하기 때문에 산업발전이 저하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知的所有權制度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다.

또 NICS等 工業化가 進展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強化하려면 海外에서의 技術移轉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어 知的所有權保護를 低水準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에 다음예를 들 수 있다.

〈Fig 2-6〉 日本, NICS, ASEAN의 縱走的 追跡構造  
(RCA 變化, 1970-1979年)



\* h國 i 商品の RCA  $E_i / W_i$ ,  $E_i$ 는 h國 i 商品の 輸出額,  $E_i$ 는 h國의 工業製  
品輸出額,  $W_i$ 는 世界全體의 i 商品輸出額,  $W$ 는 世界全體工業製品的 輸出額.  
figure中 圖表示는 下落을 나타냄.

資料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various issues.

參考 世界經濟國家日本,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 1986年

○ Brazil, Argentine, Mexico, Indo 등은 特定産業에 對한 特許保護를 廢止하고 있다.

○ 物質特許保護를 認定하지 않고, 製法特許保護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化學物質에는 製法特許侵害事實은 證明으로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新化學製品的 發明에 對해서 有効한 保護를 얻지 못할 염려가 있다.

○ 特許期間이 不當하게 짧은 나라도 있다. “유고스라비아”는 醫藥品에 對해서 特許保有者가 國內에서 生産하지 않는 경우, 特許期間은 7年間이고 “印度”는 特許期間은 出願에서부터 7年間 혹은 特許부여로부터 5年間中 짧은쪽을 정하고 있음.

○ 特許가 주어지지부터 1年~3年以內에 特許를 實施하지 않는 경우, 特許權의 強制實施의 License를 要求받아 特許取消된 Case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裁定에 依해서 決定되는 Royalty는 開發 Cost와는 關係없이 매상고의 5%以下로 設定되는 경우가 많다.

○ Computer Program의 著作權의 依한 保護는 實施豫定國을 포함해서 印度·Brazil·헝가리·한국 등

一部國에서 實施되고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러한 發展途上國에서 知的所有權制度의 정비가 늦어지는 것이 技術 도입의 促進要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企業活動을 통한 技術移轉의 遲緩한 進展에 阻害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 日本의 經驗과 今後 知的所有權제도 정비

知的所有權制度 특히 特許制度는 其 발전경위를 보면 外國에서 先進技術을 도입키 위한 施策에서 發生한 것이다.

特許權에는 新規性·進歩性이란 要件이 있어 公知의 것보다 技術水準이 높지 않으면 認定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特許出願이 外國에 依하여 많이 되는것은 國內市場에 參與코자 하는 外國企業의 關心과 意慾의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外國企業의 特許申請을 통해서 先端國際技術情報에 接할 수 있는 것이다.

○ 日本은 明治開國以來, 技術·資本·財等 經濟資源의 “國際移轉”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發展初期부터 特許法과 著作權法等의 知的所有權制度를 導入하였다.

그 以來 거의 1世紀에 걸쳐 貿易收支·貿易外收支·

投資收益收支·特許支拂收支 모두가赤字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國際移轉”을 活發히 받아들임으로 해서 日本産業은 輸入代替로부터 國內市場擴大와 더불어 生活를 擴大해서 熾烈한 國內市場競爭을 通해서 높은 國際競爭力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知的所有權制度的 정비는 先進技術을 받아들여 産業과 經濟를 발전시키에 있어서의 制度的 특수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

現在 몇 發展途上國에서는 이점을 認識하고, 知的所有權制度整備를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이 問題에 대한 現實의 이고도 總合的인 해결을 위해서는 發展途上國에 對한 適正한 Handicap을 내포한 新 frame work이 必要하다.

其中에는 發展途上國의 特許審査等の 協力과 研修生을 받아들여, 知的所有權情報의 提供, 研究開發의 協力等, 先進國이 일층 協력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 4. 先進國間 技術移轉과 知的所有權制度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Harmonization은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 뿐만 아니라 先進國間에도 必要하게 되었다.

先進國에서는 各國 다같이 基本的으로는 거의 同等한 制度를 두고 있어 新分野에 對해서도 Computer Program과 Data Base의 著作權法에 依한 保護微生物寄託制에 依한 特許法의 保護, 植物新品種의 特許, 特別保護法에 依한 保護에서 볼 수 있듯이 基本的인 構成에서 國際的 調整을 도모하고 있는 Case가 많다.

그러나 構調的 運用規定을 보면 신청수속과 保護水準에 差異點이 보이고 運用態面에서도 이러한 點을 고려한 국제적인 調整과 改善을 할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現在 各國經濟는 相互依存關係를 強調하고 世界經濟는 一調化되어 있어, 世界의 事業展開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國際的 特許網을 펼쳐들러치는 등의 必要性이 發生하고 있는바, 各國 知的所有權制度와 그 運用에 있어 國際的 整合性이 充分치 못한 경우에는 特許取得에 費用과 時間이 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特許取得된 것이 他國에서는 거절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또 今後 先端技術分野에서 國際的 共同開發과 Joint Venture가 活發히 進行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Know-How의 部分을 포함한 知的所有權保護에 대한 思考方式과 制度가 國家에 따라 다르다면 권리보호취급에 關한 合議를 함에 있어서 問題가 생기고 後에 相對方과 Trouble이 발생할 可能性도 있어 具體的 運用도 함께

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調整이 必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調整現況

가) 知的所有權制度的 國際調整에 對한 美國과 EC의 位置

① GATT에서의 調整을 重視하는 美國

○ 知的所有權에 關한 國際·Rule의 設定에 關해서는 美國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적소유권제도에 關한 國際的 Rule의 設定을 公正한 貿易을 實現키 위한 有力한 수단이라고 하고, 그 調整에 對해서는 GATT의 場에서 規定하여 갈것을 重視하고 있다.

○ 또 美國의 各産業을 代表하는 11個의 多國籍企業(Dupont·휴렛파카드·브리스틀마이어·몬산토·파이자·존슨앤드존슨·베르크·IBM·GE·GM·CBS)은 知的所有權이 國際 Business를 展開함에 있어서 中核이 되는 制度라 重視하고 國際的 Rule 作成은 民間企業이 Initiative를 갖고 推進하면서 美國政府와 各國政府, 企業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組織으로서 1986年 봄에 IPC(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知的所有權委員會)를 結成하였다.

○ IPC는 “特許·著作權·商標·Trade—Secret”라는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改善에 關하여 國際的 支持를 얻을 수 있는 活動을 展開”하자는 目的에 입각해서 1986年 9月 “Uruguay”에서 開催된 GATT 자료회의에서 New—Round檢討項目으로서 知的所有權問題가 採擇되어야 함을 서둘러 主張함과 동시에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 美國政府에 적극적으로 Approach하였다.

○ 또 Uruguay會議以後에는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國際的 Rule作成이 New—Round에서 다시 提起되기 전에 民間 Level에서의 調整을 圖謀키 위하여 일본과 EC經濟界의 代表와 함께 1987年 3月 上旬에 New-York에서 知的所有權에 關한 國際會議을 開催하여, 民間企業立場에서 通商貿易을 活性化시키기 위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기본 Rule을 New-Round에 提案하자는 內容의 採擇을 하였다.

② 不正商品貿易에 關心을 보이는 EC

○ EC는 Service部門과 High-Tech分野의 國際競爭力이 美國과 日本에 比하여 약하기 때문에 New-Round檢討項目으로서 知的所有權制度에 關한 問題를 取扱하는데 對해서는 그다지 열성적이지 아니었다.

○ 그러나 EC自身이 多大한 손해를 입었으며 Tokyo-Round 以來의 懸案事項인 不正商品(농특상표를 不正으로 부친 偽物)貿易에 對해서는 GATT에서 이미 關

始된 不正商品貿易의 Rule化作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New-Round에서 取扱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결과 Uruguay 각료선언에서는 知的所有權分野에 對해서 “不正商品을 포함한 知的所有權의 貿易의 側面”이라는 表現을 採擇하였다.

나) 知的所有權制度的 國際調整에 對한

發展途上國의 位置

發展途上國은 Paris條約에 기초한 特許制度를 出發시킨 現在의 知的所有權制度는 先進國에 有利한 制度라 하여 知的生産物의 權利保護를 逆으로 약하게 하고자 하는 傾向을 強하게 보이고 있다.

〈Paris條約改正을 目標로 한 G77의 움직임〉

G77이라 불리는 發展途上國의 Group은 Paris條約은 先進國에 利益을 출분이고 發展途上國의 經濟自立을 阻害한다는 基本認識에서 特許權效力制限等을 내포시킨 修正案을 採擇코자 國際會議場을 통해서 各國에 積極的に 活動을 하고 있다.

G77은 Paris條約改正을 檢討했던 1981년의 “나이로비”大會에서 特許를 申請한 當該國에서 그 特許를 實施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 實施(合作工場의 稼動 License生産開始等)가 不充分한 경우에는 特許出願 또는 特許부여일로부터 一定期間을 경과한 後에 知的所有權者의 意思에 關係없이 自動的으로 強制實施許諾을 當該國이 設定할 수 있고, 다시 5年後에는 特許取消까지도 強制로 할 수 있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改正案을 提出하였다.

이 改正案에 依한 즉, 後發者(大部分의 경우 發展途上國)는 이렇다할 努力을 하지 않아도 開發者의 成果(特許等)를 入手할 수 있게 되므로 해서 知的利益과 公共利益的의 Balance가 현저히 後發者에 不公平하게 되는 制度이다.

○ 만일, 이와 같은 制度가 採用되게 되던 先進國은 技術의 優位를 지키기 위해서 企業秘密形態로 技術을 保有하려고 하기 때문에 發展途上國에 技術移轉(License 供與와 直接投資)이 停止되고 反對로, 發展途上國의 經濟發展이 억제되리라 豫想된다. 이 改正案이 갖고있는 問題點에 對해서는 日本의 경우 다음과 같이 指摘되기도 한다.

“今日 增大하고 있는 研究開發投資의 結果는 國內産業만으로는 回收곤란하고, 國際의 特許를 確保함으로써 高度의 企業戰略을 講究해야 한다. 이러한 時期에 日本輸出市場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는 途上國에서 近代의 特許制度를 잃게하는 것은 今後 貿易秩序維持를 어렵힐것이 明白하다. 그들이 우리들로부터 얻은 特

許品을 自由로히 만든다든가 輸入한다든가 해서 途上國內에 流通시킨다해도 이를 中止시킬 手段이 없게 된다.” (五月女正三 “企業을 지명하는 特許管理, 日刊工業新聞) <계속>

# 新 刊 案 內

## 發明과 特許의 世界

저자 : 特許辯護士 David Pressman 著  
特許廳 電氣課長 鄭 禎 燮 譯

규격 : 590면  
가격 : 15,000원

## 知的 所有 權 法

저자 : 宋 永 植 外 2人  
규격 : 국판 959면  
가격 : 18,000원

## 新 特 許 法

저자 : 南 啓 榮 外 3人  
규격 : 국판 510면  
가격 : 8,300원

## 工業 所有 權 法 令 集

발행처 : 特許廳 · 韓國發明特許協會  
규 격 : 국판 998면  
가 격 : 10,000원

## 工業 所有 權 法

저자 : 李 秀 雄  
규격 : 국판 748면  
가격 : 12,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자료판매센터 (568-8263)로 문의 바랍니다.